

# 11.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91호 1997.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이 개정(1997. 8.22, 법률 제5363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 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로 토지를 물납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재정경제원장관소관으로 등기한 후 다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리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소관으로 등기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탁받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조 각호의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산의 사용, 임대, 처분과 토지의 매입)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사용 또는 임대는 그 대상이 되

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수급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매입의 대상과 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물납토지의 인계) ①국세청장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물납받은 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여 등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등기권리증 등 관계서류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토지의 분기별 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단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사용·임대·처분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을 사용·임대·처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을 사용 또는 임대하게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사용료 또는 임대

료의 100분의 5

2. 위탁재산을 매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매각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임대·처분하거나 매입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